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3. 7.(수)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10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공개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18-11-094)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30억원의 자본금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확충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 시정명령(안)은 2016년 재허가 시 부가한 자본금 30억원 확충 조건 중 증자 미이행 금액 20억원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그 이행 실적을 이행완료일부 1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이하 OBS라고 하겠습니다에 대해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년 12월 29일 OBS는 최다액출자자의 8억원 증자, 그리고 ‘18년 1월 19일 2대 주주의 2억원 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 1월 30일 최대주주가 20억원을 무이자 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8년 2월 12일 방통위는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18년 2월 27일 OBS에서 방통위의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조건 및 위반내용입니다. 재허가 조건은 OBS 경영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금 30억원 확충 조건을 부가하여 재허가 의결한 바 있습니다. ‘16년 12월 26일 의결한 재허가 조건

내용을 보고드리면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이행된 금액을 고려하여 책정한 30억원의 자본금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확충할 것, 증자 시에 최대액출자자를 비롯한 주요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만일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제3자 배정 등도 적극 고려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위반내용은 OBS가 재허가 조건에 대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본금 30억원을 확충해야 하나 기한 내에 8억원만 증자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한편,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2억원을 증자하여 자본금 총 30억원 중 10억원의 확충만을 이행하였습니다. 피심인의 의견입니다. 재허가 조건의 이행실적은 형식적으로는 10억원의 자본금 확충과 20억원의 자본 대여 형식이지만, 20억원 자본 대여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자본금 확충을 통한 OBS의 재정능력 개선이라는 재허가 조건의 목적에 부합하고, 따라서 O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흑자 전환을 통해 자본금 결손 규모 7억원을 감소시켜 재허가 조건의 사유였던 자본 잠식 우려를 일정 정도 해소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OBS의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본금 30억원 확충 재허가 조건은 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가된 것이지만 OBS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8억원만 증자하여 자본금 30억원 확충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증자 2억원만 추가로 이행하여 증자 규모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의 20억원 대여는 부채에 해당할 뿐 이를 증자나 증자에 준하는 자본금 확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에 대해 안정적으로 방송운영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3월 중에 오비에스 경인티브이(주)에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18년 6월까지 시정명령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는 사무처 의견에 제가 반대의견을 낼 생각은 아닙니다. 그만큼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그렇게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쳤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심인 OBS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법무법인의 의견서는 일단 재허가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봐달라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우리는 대주주 20억원 무이자 대여금을 자본금이라고 볼 수 없고 부채라고 해석하고 있고, OBS에서는 어쨌든 재정능력 개선이라는 재허가 조건을 충족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격하게 해석을 했고 OBS는 폭넓게 받아들여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그쪽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행정의 일관성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OBS 재허가 당시에 아주 엄격하게 재허가 조건을 부가한다는 강한 취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혔었고 그런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해석도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면 좋습니다. 그런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회생을 지원하고 정부가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익단체가 아니라 공익활동을 하고 또 지역 시청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취약매체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통위가 규제감독기관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또 규제감독을 하는 것 이전에 사업자의 고충이나 취약매체의 어려움,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사업자가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OBS가 경영상 긴축경영을 해서 흑자를 내고 있고, 또 처음으로 창사 이래 10년 만에 보너스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노사가 함께 회사를 살리자는 그런 일치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또 그렇게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취약매체의 경영을 위축시키거나 그런 노사 간에 모처럼 일치된,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꺾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명령, 특히 기한을 어겼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자본금 확충이 아니라 부채에 불과하다는 해석에 제가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만, 보면 시정명령에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자에게 기한을 여유를 줄 수 있는지, 꼭 3개월이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우선 여쭙보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기한은 방통위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이전에도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줘서 계속 시정명령을 요구했었고, 사실 이전에도 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OBS에 대해서 총 5회 정도 방통위가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한 방통위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3개월보다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쨌든 우리가 잘 지켜보고 또 회사의 자구노력, 어떻게든 회생을 시키겠다는 그런 직원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 없도록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아량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시기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OBS가 이런 기회를 계기로 좀 더 발전적으로 방송사업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고받은 대로 피심인이 10억원의 자금 확충 외에 최대주주의 20억원 자금 대여가 OBS의 재정능력 개선이라는 재허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고받은 대로 먼저 대여금은 부채로서 자본금 증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피심인이 방통위 방송사업 재허가 처분 중 30억원 자본금 확충에 대한 부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가 패소한 바 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작년 12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보면 방통위의 2016년 재허가 조건은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확충시킴으로써 OBS의 재정능력을 개선시키고자 한 것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OBS의 재정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증자 외에 자금 차입, 사채 발행 등의 수단도 가능하나 자금 차입 등의 수단은 결국 OBS가 상환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재정능력을 확실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은 증자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역시 피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자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의 8억원 증자만 정해진 기한 내 이행된 것이고 2대 주주인 경기고속이 2억원을 올해 1월 19일에 납입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 시한 일부 지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용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대여금 20억원을 증자에 준하는 재허가 조건 이행으로 인정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고 다른 방송사들의 재허가 조건 이행 미비 시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결주문과 같이 시정명령을 처분해서 OBS가 공적 책무를 이행하면서 방송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유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16년 12월 26일 부가한 재허가 조건은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입니다. 이것을 다시 2017년 말까지 준수하라는 조건으로 재허가를 준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2회 연속 해서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증자하라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물론 OBS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서 증자하라는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폭넓게 해석한다면 어찌 보면 감독 기관으로서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0억원 증자에 대한 재허가 조건은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OBS에서는 증자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법률대리인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자가 불가능하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OBS 1대 주주인 영안모자만 증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2대 주주, 3대 주주 이런 주주도 증자에 참여해서 이 재허가 조건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후자가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타 주요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안 되면 감자 후에 다시 증자하는 방법도 있고, 경영기법상으로 보면 증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 주주인 영안모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냐? 증자에 참여하기 어렵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1대 주주인 영안모자와 여타의 주요 주주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증자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보면 증자할 의지가 없다, 재허가 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에 올라온 대로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라는 시정 명령 그리고 그 기간을 3개월 정도 주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재허가 조건에 부가되어 있는 자본금 확충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논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자와 주주들이 의무를 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행정기관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자본금 확충이 되지 않아서 결국 허가가 취소된 iTV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OBS의 경우는 지난번에 일부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방송이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래 허가의 목적과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결국은 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확충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의무가 부과된 것인데 이것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추구하는 목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아마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OBS도 잘 알 것이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뤄 왔다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방송 경영의 뜻이 계속 있다면 충분히

의지를 발휘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급적 사업자를 골탕 먹이거나 혼내려는 목적이 아니고 사업을 잘하도록 자극하고 감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의지를 좀 더 발휘하게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방송정책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마침 방송정책국장님 안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걱정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일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도심에서 태극기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규모로 열렸는데 기독교연합단체, 구국기도회를 시작으로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서울역에서 경북궁역에 이르는 태평로 또 세종대로 일대를 메우고 오후 늦게까지 행진을 벌이는 이런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방송을 보면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확대하는 현상이 빚어졌고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쪽의 보도가 다음 날 또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정권이 장악한 방송이 철저하게 정권 맞춤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한국당 성명에서는 “언론이 아무리 태극기 집회를 외면하고 축소한다고 해도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 특히 정권과 노조에 장악된 방송들은 왜곡, 축소, 편파보도를 자성하고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편향적이고 반대 여론은 무시하는 이런 방송을 하자고 우리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만 명의 대규모 집회가 도심 한 복판에서 열렸는데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확대하는 공영방송이 과연 방송의 정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그동안 지적해 왔던 대로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 홍보방송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권력을 비판할 때는 비판할 수 있고 또 민심의 정확한 흐름을 가감 없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전달하는 그런 공영방송을 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려는 정치적 편향보도가 아마도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편파적인 이런 보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인데 방송은 어느 한쪽 진영만을 위한 방송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제대로 감독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정책국장님, 우리가 방송 편성에 관여하거나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해서 직접 간섭을 할 수 없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송의 편향보도나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감독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정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방송 재허가를 내줄 당시 재허가 조건에 그런 편파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 당시 재허가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 논의가 있었고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최종적으로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포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방송내용을 가지고 편성에 관여하거나 그렇게 간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방송 평가 또 재허가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재허가 조건이나 승인조건들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점검할 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이런 방송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정말 편파방송이 없이 또 공정하게, 공익에 부합하게 어느 한쪽 진영만을 위한 방송이 되지 않게 그런 균형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을 철저하게 잘 점검해서 방송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불공정하게 보도되었다, 집중적으로 보도가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보시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통위가 방송내용, 편성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아주 깊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방통위가 개별 방송사의 편성, 특히 뉴스 아이템 선정이나 내용, 논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3년 가까이 있으면서도 포괄적으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해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보도가 정말 잘못됐다, 왜곡 보도하고 오보했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상식에 기반해서 그런 언급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극기집회 성격이나 집회의 폭력성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곡 편파방송을 하려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송의 편성, 제작의 독립성, 자율성은 방송사 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확히 문제가 있다, 내부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재허가 조건 부가,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지, 이러한 특정 아이템 하나를 놓고 그것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방통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이 개별적으로 사무처에 전달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대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송내용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사 내부적으로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노사가 같이 운영합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거를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공영방송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공방위가 제 기능을 못했지만 새 정부에서 공방위는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 문제가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제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방통위는 나중에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송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방통위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나 장치는 전혀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거나 방통위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께서 특정 방송의 경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심의할 수 없는 것이고,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걸러서 논의하게 될 것이고 저희에게 넘어오면 그것을 시행하는 측면에서는 저희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저희 위원들께서 계속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대내외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3분 폐회 】